

의안번호	2219347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6. 8. 25.
추계번호	26B2932

한국방송공사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1.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2. 라디오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u>남북교류방송</u>,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국제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수익사업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현행 「방송법」 상의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 중 제1조(목적)·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안 제17조(업무)를 제외한 조문들은 현행 「방송법」 상의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과 동일하므로,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¹⁾

[표 1] 제정안과 방송법 간 관련 조문 비교

제정안 조문	방송법 조문
안 제2조(법인격)	제43조(설치등)
안 제4조(자본금)	
안 제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안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안 제8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9조(이사의 임기 및 퇴임)	제47조(이사의 임기)
안 제10조(이사의 결격사유)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안 제11조(이사의 책임 및 이사회 기능)	제49조(이사회 기능)
안 제12조(집행기관)	제50조(집행기관)
안 제13조(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0조의2(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안 제14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안 제15조(직원의 임면)	제52조(직원의 임면)
안 제16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안 제17조(업무) *방송법 상 업무에 남북교류방송 등 추가	제54조(업무)
안 제18조(회계처리)	제55조(회계처리)
안 제19조(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안 제20조(재원)	제56조(재원)
안 제21조(예산의 편성)	제57조(예산의 편성)
안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안 제24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안 제25조(보조금 등)	제61조(보조금 등)
안 제2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안 제27조(감사)	제63조(감사)
안 제28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안 제29조(수신료의 결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안 제30조(수신료 등의 징수)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안 제31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안 제32조(수신료의 사용)	제68조(수신료의 사용)

자료: 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제정안 중 제1조(목적) 및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또한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제정안 제17조는 ‘남북교류방송’을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무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 중 대외(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수행에 대하여는 현행 「방송법」²⁾에 따라 현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한국방송공사의 대외(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현황: 2023~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외(국제)방송	3,639	2,811	3,559	3,203
	사회교육방송	2,713	2,223	2,713	2,713
	소계	6,352	5,034	6,272	5,916
대외방송 송출지원 (일반회계)	송출비	5,289	5,006	5,329	5,057
	송신시설교체비	800	760	760	423
	소계	6,089	5,766	6,089	5,480
합계		12,441	10,800	12,361	11,396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남북교류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방송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제작 규모 및 비용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 조성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통일열차, 경제로 통일로 등)에 대하여는 제작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방송법」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